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실시〉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74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27.

다.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하고 있음.

이처럼 학생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¹⁾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생략)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③ -----건강검진----- -----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④ -----제1항----- ----- ----- -----

1) 개정안의 제안 배경과 관련하여, 2018년 감사원이 실시(6.18.~7.6.)한 특정감사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2018. 11.) 참고, 감사결과 확인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은 붙임 참조.

현행	개정안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
⑤ 제2항에 따라 <u>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u>	⑤ ----- <u>건강검진을 한 공단은 대통령령</u>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u>	⑦ <u>제1항</u> ----- ----- ----- -----.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u>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③ ----- <u>건강검사(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²⁾,

2)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학교의 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 중 2곳 이상을 선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체결한 후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며³⁾, 학생 건강검진 결과 중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하고 나머지 건강검진 결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⁴⁾.

< 현행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 4)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관리
-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2.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4. 콧병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 · 목부위림프절비대 · 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검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 · 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 · 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 교육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처별로 수행하는 건강검진사업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가건강검진⁵⁾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08.3)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검진(0~5세)과 성년 건강검진

5)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며, ① 「모자보건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②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성인건강검진,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검진 등 검진대상별로 검진주체 및 근거 법령을 달리하고 있음. 또한 ⑧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⑨ 잠복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⑩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 특수건강검진 등이 있음.

(20세 이상)을,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6~18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9~18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건강검진 비교표 >

구분	영유아기	청소년기		성년 건강검진	
	영유아검진	학생 검진	학교밖 청소년	일반	암검진
대상	0~5세	6~18세	9~18세(미취학)	20세 이상	20세 이상
검진 항목	문진·진찰, 발달평가 등 21개	척추측만증, 혈액·홍부 X-선 등 24개	21개 * 매독, HIV, 자궁경부암 추가	혈액·홍부 X-선 등 25개	6개 (위·유방·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폐암)
검진 비용 ('23년)	832억 원	410억 원 (175만명)	5.2억 원 (약1만명)	7,735억 원	1조 3,077억 원
소관 부처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건보공단 위탁)	복지부	복지부
정보 관리	공단	학교장	공단	공단	공단

자료: 교육부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⁶⁾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강검진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진대상자는 같은 법 제14조⁷⁾ 등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건강검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6)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에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성년 건강검진과 학생 건강검진의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성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수행하는 등 수행하는 주체가 다를 뿐 검진대상 선정 및 통보, 검진실시, 결과 통보 등 기본적인 업무 처리 절차가 동일한 바,

< 성년·학생 건강검진 비교 >

구분		성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검진수행주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학교장	
검진대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만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검진기관		공단 지정병원		공단 지정병원 중 학교 지정 병원(2개 이상)	
비용 부담		건강보험료		학교 예산	
건강검진절차	구분	수행주체	수행내용	수행주체	수행내용
	검진안내	공단 및 사업자	공단→ 사업자→ 수검자 (건강검진 안내서)	학교장	학교장→ 학생 (가정통신문)
	검진실시	수검자	공단 지정병원	학생	공단 지정병원 중 학교 지정 병원 (2개 이상)
	검진결과 통보	병원	병원→ 공단, 수검자	병원	병원→ 학교, 학생
	검진비용 청구	병원	병원→ 공단	병원	병원→ 학교
	검진비용 지급	공단	공단→ 병원	학교장	학교장→ 병원

자료: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감사원

개정안에 따라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함에 따라 학교의 행정업무가 감소함은 물론,

학생 건강검진 결과가 영유아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 등과 연계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이력이 지속·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국가 건강검진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따라 학생들이 성년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상황에서, 부모의 무관심 등 사유로 학생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학교에서 매년 검진기관 선정·계약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검진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으므로,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실시하여 검진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검진결과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으며⁸⁾,

8) '24.7~12월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 대상으로 원하는 날에 원하는 검진 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면 위탁시기를 결정할 예정임.

다만 학생건강검진 실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인 「학교 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 제5항의 ‘대통령령’을 아닌 ‘교육부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의 복지부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의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예산 지원액을 건강검진 사업 예산으로 활용 중이나 검진사업 지출액이 예산 지원액을 초과하고 있어,

연간 400~500억원에 달하는 학생 건강검진 업무 이관 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관련한 기존 교육부·교육청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이관을 전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의 ‘학생건강검사’와 여성가족부 소관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01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9).

문 의 처
02)6788-5184

-
- 9) 21대 국회에서 동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의안번호 2100834,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이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후 의결되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838,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이 임기 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참고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2018. 11.)

중 ‘감사결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분야’(요약부분 인용)

<주요 문제점>

- 학생건강검진은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동일한데도 유일하게 건보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실시·관리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생애주기별[유아기→(청소년기)→성년기] 검진정보의 연계 관리가 미흡
- 중복검진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종합검진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제외신청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신청만하면 증빙없이 제외, 수검률 제고 목적으로 편법 사용 우려
- 지방이양된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건강검진사업이 부실운영되고 있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유지·증진 도모에 실패 우려(단,안산시보건소는 모범사례로 통보)

<개선방안>

-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검진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검진결과서 등 증빙 확인 후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검률 제고 목적으로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주의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노인건강검진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이 미흡한 지자체는 실시를 독려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하는 방안을 마련

*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2018.11) 중 ‘감사결과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분야’ (요약부분 인용)

□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 중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통합’ 부분

2-1. 건강 수준 진단 내실화 및 증진활동 강화

□ **신규**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통합

- **(건강검진체계)** 학생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 추진('24~) 교육·복지
- 검진기관 이용의 **편의성** 향상 및 **생애주기별 검진정보** 관리를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24년 시범사업 착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성과 분석 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 추진

